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제493호 2015. 8. 5. (수)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거창군 고시 2015-95호 거창군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3

거창군 고시 2015-96호 거창군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6

거창군 고시 2015-97호 거창군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8

거창군 고시 제2015-98호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10

거창군 고시 제2015-99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변경)고시 11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5-678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2

거창군 공고 제2015-679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5

거창군 공고 제2015-685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
고 17

거창군 공고 제2015-686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1

거창군 공고 제2015-687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6

거창군 공고 제2015-688호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3

거창군 공고 제2015-689호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37

거창군 공고 제2015-690호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40

거창군 공고 제2015-695호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48

거창군 공고 제2015-698호 2015년 재산세 7월분 공시송달 공고 60

거창군 공고 제2015-701호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2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12호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9

거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 공고 제2015-13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7

거창군 신원면 공고 제2015-3호 거창군 신원면 예동지구 경리정리 사업환지청산교부금 및 손실보상금 교부통지서 공시송달공고 83

회 람									
--------	--	--	--	--	--	--	--	--	--

거창군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26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15. 07. .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군계 획 도로	송정리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 (소로3-26호선)	거창읍 송정리 104-1번지 일원	소로3-26호선 L=471.0m, B=6.0m	당초:2013.08~2014.12.31 변경:2013.08~2016.12.31	경고제211호 ('85.12.28)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나)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3. 도시계획시설(도로) 시행 조서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군계 획 도로	송정리도시계획 도로정비사업 (소로3-26호선)	거창	송정	소로	3	26	471.0	6.0	2,774	거창읍 송정리 104-1	거창읍 김천리 2-2	경고 제211호 ('85.12.28)	2013.08 ~ 2016.12.31

4. 관계도면 : 게재 생략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3)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 소로 3-26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15,108	2,774					
1	거창읍 송정리	104-1	도	399	18		거창군			
2	거창읍 송정리	104-4	답	15	15		“			
3	거창읍 송정리	287-5	구	55	25		농림수산 식품부			
4	거창읍 송정리	617-2	도	1,066	28		“			
5	거창읍 송정리	71-11	대	79	79		거창군			
6	거창읍 송정리	71-10	대	72	72		“			
7	거창읍 송정리	71-12	답	20	20		“			
8	거창읍 송정리	72-6	대	120	120		“			
9	거창읍 송정리	105	구	133	10		농림수산식 품부			
10	거창읍 송정리	107-1	답	149	149		거창군			
11	거창읍 송정리	618-2	구	1,180	32		농림수산식 품부			
12	거창읍 송정리	110-9	답	4	4		거창군			
13	거창읍 송정리	110-10	답	158	158		“			
14	거창읍 송정리	110-7	답	232	232		“			
15	거창읍 송정리	1061-18	구	1,269	13		농림수산식 품부			
16	거창읍 송정리	610-2	구	988	37		농림수산식 품부			
17	거창읍 송정리	59-25	도	4	4		거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15,108	2,774					
18	거창읍 송정리	59-26	도	5	5		“			
19	거창읍 송정리	455	구	1,319	517		농림수산 식품부			
20	거창읍 송정리	110-5	답	31	31		거창군			
21	거창읍 송정리	1055-1	도	6,331	121		국토 해양부			
22	거창읍 송정리	60-10	도	3	3		거창군			
23	거창읍 송정리	30-5	대	251	91		“			
24	거창읍 송정리	30-7	대	23	23		“			
25	거창읍 송정리	30-6	대	2	2		“			
26	거창읍 송정리	231-7	답	32	32		“			
27	거창읍 송정리	231-5	답	127	127		“			
28	거창읍 김천리	333-17	답	209	209		“			
29	거창읍 김천리	333-6	도	505	270		“			
30	거창읍 김천리	338-10	대	39	39		“			
31	거창읍 김천리	338-8	대	125	125		“			
32	거창읍 김천리	338-9	대	98	98		“			
33	거창읍 김천리	339-13	대	25	25		국(재무부)			
34	거창읍 김천리	339-14	대	10	10		거창군			
35	거창읍 김천리	340-12	대	23	23		국(재무부)			
36	거창읍 김천리	340-11	대	7	7		거창군			

거창군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9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15. 07. .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군계획 도로	대동리(소로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읍 대동리 126-38번지 일원	소로 2-9호선 L=100.0m, B=8.0m	당초:2013.08 ~ 2014.12.31 변경:2013.08~2015.12.31	경고제256호 (‘77.04.25)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 나)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3. 도시계획시설(도로) 시행 조서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군 계획 도로	대동리(소로2-9 호선)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거창	대동	소로	2	9	100.0	8.0	800	거창읍 대동리 126-38	거창읍 대동리 126-23	경고 제256호 (‘77.04.25)	2013.08 ~ 2015.12.31

4. 관계도면 : 게재 생략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3)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 소로 2-9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2,295	800					
1	거창읍 대동리	126-38	도	662	36		(국)건설부			
2	거창읍 대동리	126-1	답	230	230		거창군			
3	거창읍 대동리	126-50	답	208	208		“			
4	거창읍 대동리	126-49	답	224	224		“			
5	거창읍 대동리	126-22	답	1	1		“			
6	거창읍 대동리	126-23	도	970	101		“			

거창군 군계획시설(교통시설 : 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105호선)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및 경상남도 사무 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 합니다.

2015. 07. .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 류	명 칭	위 치	시행규모	사업기간	최 초 결정일
군계획 도 로	상마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조면 마상리 494-6번지 일원	소로 3-105호선 L=314.5m, B=6.0m	당초 : 2013.07~2014.12.31 변경 : 2013.07~2015.12.31	경고제115호 (‘79.05.24)

2. 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상림리 64-1번지)
- 나) 성 명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3. 도시계획시설(도로) 시행 조서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 행 구 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 점	종 점		
군 계 획 도 로	상마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가조	마상	소로	3	105	314.5	6.0	1,895	가조면 마상리 494-6	가조면 마상리 355-1	경고 제115호 (‘79.05.24)	2013.07~ 2015.12.31

4. 관계도면 : 게재 생략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94)에 비치]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 :

○ 소로3-10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5,395	1,895					
1	가조면 마상리	494-7	전	7	7		거창군			
2	가조면 마상리	494-6	전	325	325		“			
3	가조면 마상리	433-1	대	134	134		“			
4	가조면 마상리	423-2	대	29	29		“			
5	가조면 마상리	420-1	대	8	8		“			
6	가조면 마상리	418-1	대	227	68		“			
7	가조면 마상리	451-1	대	1	1		“			
8	가조면 마상리	450-3	대	140	140		“			
9	가조면 마상리	496-1	대	158	158		“			
10	가조면 마상리	499-1	대	157	157		“			
11	가조면 마상리	861-40	도	2,695	92		국(건설부)			
12	가조면 마상리	431-1	대	19	19		거창군			
13	가조면 마상리	434-1	대	11	11		“			
14	가조면 마상리	432-1	대	128	128		“			
15	가조면 마상리	421-1	대	44	44		“			
16	가조면 마상리	422-1	대	135	135		“			
17	가조면 마상리	449-5	대	137	137		“			
18	가조면 마상리	492-11	임	639	49		“			
19	가조면 마상리	353-1	대	35	35		“			
20	가조면 마상리	356-1	대	88	88		“			
21	가조면 마상리	355-1	대	113	74		“			
22	가조면 마상리	357-2	도	145	36		“			
23	가조면 마상리	505-1	대	20	20		“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3 착수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시행계획 수립(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03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월천권역 종합정비사업
2. 사업구역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일원
3. 소재지 규모 : 법정리 4개, 자연마을 12개
4. 면적 : 421.5ha(농경지 489.8ha, 대지110.4ha, 임야1,383.0ha)
5. 가구·인구 : 789호(농가 509호, 비농가 및 기타 280호), 인구 1,683명
6. 사업비 : 5,000백만원(국 3,500, 도 450, 군1,050)
7. 사업기간 : 2013년 ~ 2017년(5년간)
8. 시행자 : 거창군수
9. 주요사업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커뮤니티발전소, 행복기상청 외 문화거리 1식
 - 지역경관개선사업 : 운동시설 및 조경 조성사업
 - 소득증대사업 : 사과저온저장고 및 체험시설 조성 1식
 - 지역역량강화 사업 : 교육, 선진지견학, 마을경영지원등
10. 세부사업계획이나 상세한 내용은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940-3542)로 방문하시거나 문의하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인가 (변경)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변경)승 인하며 같은 법 제9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08월 일

거 창 군 수

1. 사업목적 : 농지조성(전작물 재배)
2. 사업내역

(단위:천원)

위 치	사업시행 면적(m ²)		개간 용도	사업비 (자부담)	사업 예정 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면적			당 초	변 경	주 소	성 명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산79	21,620	4,930	전작물 재배	14,600	2013.04.08 ~ 2015.07.31	2013.04.08 ~ 2015.10.31	거창군 고제면 봉산리 750	신영순

3. 사업효과 :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055-940-3544)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38, 2-41호선)사업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07.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m ²)			
군 계획 도로	대평리(소로2-38, 2-41호선)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거창	대평	소로	2	38	120	8	1,003	거창읍 대평리 1203-4번지 일원	건고 제383호 (‘71.06.26)	당초:‘13.03~’14.12.31 변경:‘13.03~’15.12.31
					2	41	120	8	1,020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열 략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전화(055-940-3593),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편입토지조서 (소로2-4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원 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9,164	1,003					
1	거창읍 대평리	1203-4	도	917	88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1086-3	대	7	7		장주현			
3	거창읍 대평리	1083	대	66	28		거창군			
4	거창읍 대평리	1473-26	도	2	2		국(건설부)			
5	거창읍 대평리	1078-4	대	88	88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1080-2	대	43	43		“			
7	거창읍 대평리	937-1	도	188	77		이백수			
8	거창읍 대평리	937-6	대	155	155		거창군			
9	거창읍 대평리	934-3	대	7	7		“			
10	거창읍 대평리	934-17	대	337	134		“			
11	거창읍 대평리	934-13	대	27	27		“			
12	거창읍 대평리	934-16	대	28	28		“			
13	거창읍 대평리	1207-2	대	78	61		“			
14	거창읍 대평리	1082-1	대	192	73		“			
15	거창읍 대평리	1452-17	구	5,282	57		국(농림수 산부)			
16	거창읍 대평리	1081-1	대	16	16		거창군			
17	거창읍 대평리	936-1	도	238	22		국(건설부)			
18	거창읍 대평리	936-4	도	8	8		거창군			
19	거창읍 대평리	1477-13	도	143	14		국(건설부)			
20	거창읍 대평리	935-13	대	37	37		거창군			
21	거창읍 대평리	935-14	대	376	20		“			
22	거창읍 대평리	935-9	도로	929	11		“			

□ 편입토지조서 (소로2-38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원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591	1,020					
1	거창읍 대평리	1066-9	답	349	244		거창군			
2	거창읍 대평리	1063-2	답	236	236		“			
3	거창읍 대평리	1054-21	답	267	2		김진숙			
4	거창읍 대평리	1063-16	답	104	104		거창군			
5	거창읍 대평리	1063-18	답	67	67		“			
6	거창읍 대평리	1063-17	답	78	78		“			
7	거창읍 대평리	1054-17	도	98	90		“			
8	거창읍 대평리	1063-12	도	289	191		“			
9	거창읍 대평리	1056	도	103	8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25호선)사업 변경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5. 07. .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 칭	위 치		시 행 규 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m ²)			
군 계획 도로	80번택시주변(소로2-25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	대동	소로	2	25	104	8	830	거창읍 대동리 65-16번지 일원	건고 제383호 (71.06.26)	당초:13.07~14.12.31 변경:13.07~15.12.31

2. 사업 시행자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 거창군수

3. 사업 설계도 : 변경없음(기재생략)

4. 열 랐 기 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참조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 【우편번호 : 670-870/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또는 전화(055-940-3593), FAX(055-940-357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끝".

□ 편입토지조서 (소로2-25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원이외의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1,502	830					
1	거창읍 대동리	65-16	대	332	332		거창군			
2	거창읍 대동리	741-1	대	692	20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길 118	염종환외1 명			
3	거창읍 대동리	63-6	답	478	478		거창군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부제한지역 내 시설의 증축시 인근주민의 6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안 제4조 관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녹색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940-3512, 팩스 055-940-3759, 메일(mlee30@korea.kr)]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녹색환경과 수질관리담당 ☎(055)940-35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7. .
제 출 자	녹색환경과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량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를 개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부제한지역 내 시설의 증축시 인근주민의 60%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규정 삭제(안 제4조 관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담당)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 그 외 특정부서 의견 없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8.

(나) 예고결과 : 2015. 8.

(3) 본문 : 붙임과 같음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1. 학교·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3.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또는 방법용 가축의 사육
5. 일부제한구역에서 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경우 최초 사육시설 면적대비 100분의 20 이내로 증축
6. 일부제한구역에서 기존 가축사육시설의 면적 증가 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7. 일부제한구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의 사육으로 소·젓소·말·돼지·개는 5마리 이하, 닭·오리는 20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사육 시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2. 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조항 삭제(안 제11조제1항제1호)
-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 일부 삭제(안 제45조 및 제49조제1항)

4. 입법예고기간 : 2015. 08. 01 ~ 2015. 08. 20

5.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670-80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055-940-8418, Fax055-940-8418 또는 메일 alsatao@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생략</p> <p>1.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를 할 경우(다만, 동파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경우 계량기 대금은 사용자 부담)</p> <p>2. (생략)</p> <p>③ ~ ⑤ (생략)</p>	<p>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p> <p>① (현행과 같음)</p> <p>1. ----- ----- ----- -----<삭제></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45조(과태료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다.</p>	<p><삭제></p>
<p>제49조(이의신청) ① 상수도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p> <p>② (생략)</p>	<p>제49조(이의신청) ① ----- ----- ----- -----<삭제></p> <p>② (현행과 같음)</p>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 제정이유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합치 사항을 수정하고 정부의 규제 개혁 관련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여 이를 조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배수설비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 조항 삭제(안 제3조 및 시행규칙 제9조)

4. 입법예고기간 : 2015. 08. 01 ~ 2015. 08. 20

5.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670-805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68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055-940-8418, Fax055-940-8418 또는 메일 alsatao@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 관리담당 **【☎055-940-8418】**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경우</p> <p>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p> <p>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p> <p>4. 그 밖에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경우</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p> <p>1. 「거창군 상수도급수조례」 제19조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p> <p>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할 경우</p> <p>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p> <p>4.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p>	<p><삭 제></p>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p> <p>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p> <p>2.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p> <p>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p> <p>4. 하수도 사용상태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p> <p>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간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군수가 정하는 시기와 조사한 양에 의한다.</p> <p>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이 30%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에 한한다.</p>	<p><삭 제></p>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거창군 하수도사용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점용료 부과 금액이 5,000원 미만인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에게 혜택 제공
-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 대책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여 대민 신뢰성 향상

3. 주요내용

- 5,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 점용료를 미부과하는 조항 신설
(안 제3조제3항 관련)
-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상위법률에 근거 없이 반환하지 않도록 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허가취소 후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서 남은 기간에 대해 반환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13조 관련)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산림녹지과장]에게 서면(주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 670-807)이나 메일(cllay@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녹지과 공원녹지담당 **【☎055-940-348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수는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생 략)</p> <p>② (생 략)</p> <p><u><신 설></u></p> <p>제4조(점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분을 되돌려 줄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 	<p>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제4조(점용료의 반환)군수는 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에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p>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1조제3항)
 - 나.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출서류 삭제(안 제13조제1항)
 - 삭제 : 상생협력계획서
4. 소요예산 : 해당없음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670-807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상림리 64-1) 거창군청 승강기경제과 **☎055-940-3372**, fax 940-3349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공고/고시란 <http://www.geochang.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승강기경제과 상공담당 **☎(055)940-337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과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기존의 제3항) 각 호 외의 본문 중 “지정 하거나 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변경”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협의회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산업보존구역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31일

거창군수

1. 조 례 명 :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식품위생법」 제36조 시행규칙 별표14 업종별시설기준 자. 시설기준의 특례에 따라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에 맞게 개정 하고자함

3. 주요내용

-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신설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용어규정(안 제2조3호 신설)
 - 건축물 위치, 구조, 작업장,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 특례 마련(안 제7조 2 별표신설)

4. 입법예고기간 : 2015. 08. 1 ~ 2015. 08. 20

5.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의견 제출하는 곳 : (우)670-80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055-940-8151, fax 940-8119 또는 메일 ckdtmr65@korea.kr】**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모두 가능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마을만들기과 식품가공담당 **【☎(055)940-815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농가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원료로 자가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

나. 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는 제7조2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으로 한다.

제7조를 제7조의1 한다.

제7조의2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특례) ① 농업인 등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①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2.(생략)</p> <p>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을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구매·유통 또는 판매하는 가공사업 농업인등을 말한다</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생략)</p> <p>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p> <p>③ (생략)</p> <p>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① 군수는 농가 식품가공산업의을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정보 및 교육</p> <p>② 사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p> <p><u><신 설></u></p>	<p>제2조(정의)----- -----.</p> <p>1. ~ 2.(현행과 같음)</p> <p>3.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하는 자원과 용역을 활용하여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원료로 자가농산물을 50%이상 사용할 것</p> <p style="padding-left: 20px;">나.작업장 면적이 66제곱미터 이내일 것</p> <p>4. 현행 3호와 같음</p> <p>제4조(사업자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사업자는 <u>제7조2에서 군수가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u> 「식품위생법」에 정한 식품제조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또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u>제7조의1(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 신설</u> ①② 현행 제7조와 같음</p> <p><u>제7조2(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시설기준 특례)</u> ① <u>농업인 등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별표</u></p>

	<p><u>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u></p> <p><u>② ①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u></p>
--	---

<별표>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1.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한다)

가.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차단되어야 한다.

나.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작업장

가.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다.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1)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 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3)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4) 1), 2),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라.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

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마.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나.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수시설

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오염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5.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

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창고 등의 시설

가.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8.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무해하며 내수성·내부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환경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2. 개정이유 : 정부의 규제개선 추진 대책에 따른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통해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①항 : 의무조항 일부삭제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녹색환경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670-807)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녹색환경과)

○ 전화 : 055-940-3493, 팩스 : 055-940-3759,

이메일: gunsmith@korea.kr

붙임 : 1. 신구문 대비표 1부

2. 「거창군 환경기본조례」 개정(안) 1부. 끝.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거창군 환경기본조례(안)

(녹색환경과)

(제정) 1999.02.13 조례 제150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관리책임부서 : 녹색환경과

연락처: 055)940-349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이하 "군"이라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군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본이념) 군의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보전하며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형 농촌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 3조 (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 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국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군·사업자·주민 등의 책무

제 5조 (군의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형 농촌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수질·토양·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사항
6. 지구의 온난화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 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 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7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군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군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모든 군민은 건전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발적노력 및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과 환경오염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8조 (교육기관·언론등의 역할) ① 교육행정기관, 학교, 학원등 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민간 환경단체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군의 시책에 협력 자문하고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제 3 장 환경기본계획 등

제 9조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기본계획(이하"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시책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군의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 10조 (환경위원회의 설치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거창군 환경위원회를(이하"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 ③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8.13, 조례 제1984호 부칙 제2조>
6. 기타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번호 이동, 조례 제1984호 부칙 제2조, 2010.08.13>

④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⑤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 (자연 환경의 보전) ① 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2조 (자원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 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 장 환경보전시책

제 13조 (지역환경기준의 설정)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군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군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할 수 있고, 이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4)

제 14조 (지역 배출허용 기준 설정) ① 군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에 의한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5조 (지역환경영향평가)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 환경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16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은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17조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① 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환경보전기금 설치 등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 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18조 (규제조치) ① 군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9조 (분쟁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0조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등과의 협력) 군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21조 (국제 협력 강화) 군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 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 5 장 정보공개와 군민참여

제 22조 (정보의 공개) ① 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제 23조 (군민참여등) 군은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등의 과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24조 (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25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등) ① 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한다.

-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 26조 (환경백서) ① 군은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한다.

② 제 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 27조 (보고) ① 군은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시 송 달

아래 지방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납기를 2015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하오니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기한 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 4일

거 창 군 수

◆ 공시송달 대상자 ◆

연번	성 명	주소 또는 거소	세목	연도	기분	세 액	비고
1	강*국	경상북도 구미시 선기로3길	재산세	2015	정기분	22,040	
2	강*관	부산광역시 동래구 아시아드대로202번길	재산세	2015	정기분	7,600	
3	강*희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재산세	2015	정기분	13,500	
4	강*석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6길	재산세	2015	정기분	383,280	
5	거창*씨 한*공과 중중	경상남도거창군위천면황산리 대표자:신*성	재산세	2015	정기분	18,670	
6	거창연* 영*조합 법인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215 소만지구	재산세	2015	정기분	1,129,980	
7	김*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소만1길	재산세	2015	정기분	3,928,630	
8	김*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21번길	재산세	2015	정기분	76,830	
9	김*철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창대로	재산세	2015	정기분	2,524,800	

연번	성명	주소 또는 거소	세목	연도	기분	세액	비고
10	김*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21번길	재산세	2015	정기분	5,100	
11	김*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절부길	재산세	2015	정기분	5,290	
12	김*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27번길	재산세	2015	정기분	5,710	
13	김*수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모곡2길	재산세	2015	정기분	5,640	
14	박*자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사마리길	재산세	2015	정기분	6,820	
15	성*봉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재산세	2015	정기분	7,620	
16	신*순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인평길	재산세	2015	정기분	6,670	
17	신*재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15길	재산세	2015	정기분	8,310	
18	원*득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들성로11길	재산세	2015	정기분	54,730	
19	유*우	경상남도 김해시 활천로166번길	재산세	2015	정기분	6,430	
20	이*월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1길	재산세	2015	정기분	9,780	
21	이*옥*중 재산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재산세	2015	정기분	3,330	
22	임*심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재산세	2015	정기분	31,350	
23	장*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재산세	2015	정기분	8,540	
24	재향*인 회	경남 거창군 위천면 장기리	재산세	2015	정기분	7,010	
25	정*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재산세	2015	정기분	5,150	
26	조*정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거합대로4길	재산세	2015	정기분	64,940	
27	주식회사 가*이*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번영로52번길	재산세	2015	정기분	120,260	
28	최*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재산세	2015	정기분	27,770	
29	허*주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재산세	2015	정기분	6,690	
30	황*임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수남로	재산세	2015	정기분	16,660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 월 4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2. 제정이유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부터 제2조)

나. 지방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별표)

○ 지원대상사업

- 지역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의 개최
-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조대상 단체가 설립된지 3년 미만, 영리단체, 1회성 행사 및 사업인 경우 보조대상에서 제외

다. 행사의 위탁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지역문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4. 입법예고기간 : 2015. 08. 05. ~ 2015. 08. 24. (20일간)

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문화관광과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우편번호 670-807] 에게 서면이나 메일 (jhj200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5)940-34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제정 조례안 1부.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자발적인 지역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특색있는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군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를 위한 활동과 사업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 등을 개발·보급하며,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

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중에서 별도의 문화예술 활동사업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행사 및 축제의 개최
2.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사업
3. 문화예술단체 육성
4.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5. 향토 문화예술의 발굴, 전승보존,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6.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한 사업

② 군수는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단체이거나, 영리 단체, 일회성 행사나 사업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7조(행사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문화예술활동사업(제6조 관련)

연번	대상사업명	비고
1	거창군사, 읍·면지 편찬 사업	
2	경남(전국)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3	향교 기로연 재현 사업	
4	한문윤리교실 사업	
5	향교 석전대제 제례비 사업(춘/추)	
6	전통성년례 개최 사업	
7	전통 다도교실 사업	
8	원학골 전통윤리 선양사업	
9	예의생활실천 및 윤리도덕성 회복운동 교육사업	
10	경남민속예술축제 참가작품 육성 사업	
11	거창청소년예술단 사업	
12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13	성탄절 점등행사	
14	읍면 풍물패 육성사업	
15	원학골유도회 기로연 개최 사업	
16	합창단 공연 및 육성 사업	
17	경남연극제 참가 지원	
18	실버연극제 개최 사업	
19	겨울연극제 개최 사업	
21	거창문학, 거창문단 발간 사업	
21	고센시티 영화관 활성화 지원사업	
22	문학도시 추진 사업	

연번	대상사업명	비고
23	함께하는 문화예술 사랑나들이 사업	
24	거창 합창제 공연	
25	새싹발레단 정기공연	
26	거창풍물놀이패 공연	
27	민족미술인협회 거창지부 정기전	
28	송년음악회 개최	
29	대동풍물판굿 공연	
30	한국국악협회 거창지부 정기연주회 개최	
31	거창악우회 정기연주회 개최	
32	아림필밴드 정기연주회 개최	
33	경남미술 초대작가전 전시 사업	
34	수승대와 거창유학의 연원 전시회	
35	장곡묵연전 전시회	
36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개최	
37	보해산 연꽃축제 개최	
38	거창메구굿 시연, 대동한마당	
39	한시문화 계승사업	
40	원학골 3.1 민속문화제 개최	
41	가조 3.1 민속문화제 개최	
42	거창예총제 개최	
43	거창민족예술제 개최	
44	거창한마당대축제 개최	
45	거창문화관광 투어(버스타어)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거창군 지역문화 진흥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개정과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건전운영을 도모하고자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제1항 별표2[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이용료 변경 및 행자부의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인 제13조(손해배상) 제3항을 삭제하여 업무추진의 현실화 도모

3. 주요내용

가. 제4조 제1항(업무수행) 관련 보조금지원 근거 마련

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변경(제11조 제1항 별표2)

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제3항 삭제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우편번호 50126] 에게 서면이나 메일 (junsbyu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 ☎(055)940-8702】 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1. 제안이유

○ 보조금 지출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4조의 개정과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현실화를 통한 건전운영을 위해 제11조(사용료 징수 등) 제1항 별표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 이용료 변경 및 행사부의 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인 제13조(손해배상) 제3항을 삭제하여 업무처리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활동시설 및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안 제4조 제1항)
- 나. 국민여가캠핑장 이용료 변경(안 제11조 제2항 [별표2])
- 다. 손해배상 규정 삭제(안 제13조 제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 라.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 (나) 예고결과 :
 - (4) 비용추계서 : 따로 붙임
 - (5) 성별영향분석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으로 한다.

“①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를 “①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민간위탁금,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로 한다.

“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 을 “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보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관련[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요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비수기주말 :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 토요일)과 공휴일
- 비수기주중 : 성수기와 비수기주말을 제외한 모두
- 성 수 기 : 7월 15일이후부터 8월 20일까지

구 분	규 격	요 금			비 고
		비 수 기 주 중	비 수 기 주 말	성 수 기	
캐빈하우스 (4동)	복층, 6인용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4인용	60,000원	80,000원	120,000원	
전기데크 (9개소)	5M×5M,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25,000원	30,000원	30,000원	
일반데크 (5개소)	5M×5M,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15,000원	20,000원	20,000원	

※ 장비(텐트, 코펠 등)임대는 별도 계산한다.

제13(손해배상 등)제3항을 다음과 같이 삭제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별표2] 규정은 2016. 1.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업무 및 기능) ①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및 보급</p> <p>3. ~ 7. (생략)</p> <p>제11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로부터 청소년활동시설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제13조(손해배상 등)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활동시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p>	<p>제4조(업무 및 기능) ①청소년활동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민간위탁금, 보조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p> <p>1. (현행과 같음)</p> <p>2. 수련 및 체험거리의 개발, 운영, 보급</p> <p>3. ~ 7. (현행과 같음)</p> <p>제11조(사용료 징수 등) (현행과 같음)</p> <p>제13조(손해배상 등) ③ <삭제></p>

[별표 2] 청소년활동시설 사용료(제11조제2항 관련)

1. 거창군 청소년수련관(일반인 기준)(현행과 같음)
2. 거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일반인 기준)(현행과 같음)
3. 거창군 월성청소년수련원
 - 가. 청소년수련시설(현행과 같음)
 - 나. 거창월성우주창의과학관(현행과 같음)
 - 다. 거창 국민여가캠핑장
 - 비수기주말 : 성수기를 제외한 주말(금, 토요일)과 공휴일
 - 비수기주중 : 성수기와 비수기주말을 제외한 모두
 - 성 수 기 : 7월 15일이후부터 8월 20일까지

구 분	규 격	요 금			비 고
		비 수 기 주 중	비 수 기 주 말	성 수 기	
캐빈하우스 (4동)	복층, 6인용	80,000원	100,000원	140,000원	
방갈로 (3동)	단층, 4인용	60,000원	80,000원	120,000원	
전기데크 (9개소)	5M×5M,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25,000원	30,000원	30,000원	
일반데크 (5개소)	5M×5M, 6인용 추가1인당 3,000원	15,000원	20,000원	20,000원	

※ 장비(텐트, 코펠 등)임대는 별도 계산한다.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청소년활동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민법」 개정·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 2조 2항(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제1호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 제2호의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 [참조 :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우편번호 50126] 에게 서면이나 메일 (syfutur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청소년담당☎(055)940-87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5 ~
----------	--------

제출연월일	2015. 8. .
제 출 자	체육청소년사업소장

1. 제안이유

○ 「민법」 개정·시행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 2조 2항(지도위원의 결격사유)

- 제1호의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개정
- 제2호의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성별영향분석 :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을 다음으로 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을 “1. 피성년후견인”으로 한다

“2. 한정치산자”을 “2.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p>제2조(지도위원의 자격)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현행과 같음)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신원면 공고 제2015-3호

-거창군 신원면 예동지구 경리정리 사업
환지청산교부금 및 손실보상금 교부통지서-

공 시 송 달 공 고

경상남도고시 제2015-220호(2015.05.21)호로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거창군 신원면 예동지구 경리정리 사업』 환지청산교부금 및 손실보상금 교부통지서 송달 불능자에 대하여 「거창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제1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2015. 08. 04.

신 원 면 장

1. 사 업 명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예동지구 경지정리 사업
2.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일원
3.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4. 공시송달내역 : <붙임1> 참조
5. 송달내용
 - 공고기간 : 2015.08.04 ~ 2015.08.13(10일간)
 - 환지청산교부금 및 손실보상금
 - 환지청산교부금 및 손실보상금 수령 서류 : 신원면 개발담당에서 별도안내
6. 송달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신원면 개발담당(☎055-940-77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공시송달내역

단위 : 원

일련 번호 (제호)	공시송달 내용			환지청산 교부금 및 손실보상금	비고
	제목	성명	주소		
52	거창군 신원면 예동지구 경지 정리 환지청산교부금 및 손실 보상금 교부통지서	이성상	경남 거창군 거창읍 장팔리	757,260	교부불능
44	“	김용술	경남 거창군 신원면 중유리	1,190,960	“
59	“	최기준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아인 길 49	2,168,560	폐문부재